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62호 2011. 11. 23.(수)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20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80호(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81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28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5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3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56호(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58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조, 제2조) ○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제5조) ○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 일반직 : 87%이상 ⇒ 91% 이상 - 기능직 : 12%이내 ⇒ 8.5% 이내 - 정무직 : 1%이내 ⇒ 0.5% 이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 일반직공무원 ▶ 8급 : 28% 이내 ⇒ 30 % 이내 ▶ 9급 : 8% 이상 ⇒ 6 % 이상 - 기능직공무원 ▶ 6급 : 7% 이내 ⇒ 8 % 이내 ▶ 7급 : 31% 이내 ⇒ 38 % 이내 ▶ 8급 : 52% 이내 ⇒ 44 % 이내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 - 일반직공무원 ▶ 총 계 : 534명 ⇒ 550명 ▶ 6급이하 : 487명 ⇒ 503명 - 기능직공무원 ▶ 총 계 : 68명 ⇒ 52명 ▶ 6급이하 : 68명 ⇒ 52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1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5명과 8급 11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직제개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비율	91%이상	8.5%이내	0.5%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8%이내	23%이내	32%이내	30%이내	6%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율	8%이내	38%이내	44%이내	10%이상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총계	603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550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2	3	5	1	11
6급이하	503					
기능직계	52					
6급이하	5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코자 함. ☐ 주요 내용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 시 · 군 · 구 7일 =>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2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7일” 을 “9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 ①(생략) ②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u>7일</u>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2조(감사)①(현행과 같음) ②----- -----<u>9일</u>----- -----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일반직 총16명 증원 - 구본청: 3명, 의회사무과: 2명, 동주민센터: 11명 증 ○ 기능직 총 16명 감축 - 구본청: 3명, 의회사무과: 2명, 동주민센터: 11명 감축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구본청 : 행정7급 5명 증원, 행정8급 2명 감축 ▶ 의회사무과 : 행정8급 2명 증원 ▶ 동주민센터 : 행정8급 2명 증원 - 기능직 ▶ 구본청 : 기계7급1명 감축, 기계8급 1명 증원, 운전7급 2명 증원 운전9급 1명 감축, 운전8급 1명 감축 ▶ 의회사무과 : 사무8급 2명 감축 ▶ 동 주민센터 : 사무7급 3명 감축, 사무8급 8명 감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5명과 8급11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합계	603	426	18	41	7	111
정무직	1	1				
일반직	550	381	14	37	7	111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2	22	3	5	1	11
행정	22	11	3			8
의무	3			3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4	3				1
행정·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1			1		
6급	122	93	4	8	1	16
행정	62	44	4		1	13
세무	4	4				
사회복지	2	2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2	2				
보건	3	3				
간호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환경	1	1				
시설	11	1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8	5				3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3	3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3	3				
행정·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175	128	5	14	2	26
행정	79	50	5		2	22
세무	19	19				
사회복지	14	10				4
전산	4	4				
사서	1	1				
공업	7	7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7			7		
환경	5	5				
시설	19	19				
통신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60	113	2	9	2	34
행정	72	43	2	1		26
세무	10	10				
사회복지	7	3				4
전산	6	6				
사서	1				1	
공업	8	7			1	
녹지	3	3				
보건	7	3		4		
의료기술	3			3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20	20				
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농업	1	1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2	2				
9급	46	21			1	24
행정	24	6				18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린이도서관)	동
공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8	3				5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	1				
기능직	52	44	4	4		0
6급	4	4				
운전	1	1				
조무·사무	2	2				
기계	1	1				
7급	19	17	2			0
기계	2	2				
운전	6	5	1			
전기	1	1				
조무·사무	6	6				0
사무	4	3	1			
8급	22	20	2			0
운전	6	6				
전화상담	1	1				
방호	1	1				
기계	1	1				
사무	13	11	2			
9급	4	2		2		
운전	4	2		2		
10급	3	1		2		
운전	2	0		2		
조무·사무	1	1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가 일부개정(2011.10.4)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반조직 관리에 혼돈을 방지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통장의 임기를 “만60세” 에서 “만65세” 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8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중 “만60세”를 “만6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1년 10월 4일 이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4(통장의 임기만료) 조례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임기는 <u>만60세</u> 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2조의4(통장의 임기만료) ----- ----- <u>만65세</u>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코자 함. ☐ 주요 내용 ○ 입법예고 조항 신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8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 주요 내용 · 전문(신 · 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관련한 부서별 직렬 및 직급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 주요 내용 ○ 기능 조무직 및 사무직의 직렬조정 - 구분청 부서별 정원 조정(별표 1)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별표 2)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23.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7급 5명과 8급11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한 증원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미 전환하여 발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26	
전략사업 추진단	일반직	계	7	
		소 계	6	
		5 급	1	행정1
		6 급	2	행정1, 시설1
		7 급	3	행정1, 시설2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사무1
기획감사실	일반직	계	26	
		소계	26	
		5 급	1	행정1
		6 급	9	행정7, 전산1, 행정·사회복지1
		7 급	11	행정7, 시설1, 전산3
		8 급	5	행정3, 전산2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총무과		계	28	
	구청장		1	정무직1
	일반직	소 계	22	
		3 급	1	행정1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8	행정8(전임계약직 1 포함)
		8 급	5	행정4, 전산1
		9 급		
	기능직	소 계	5	
		7 급	2	조무·사무1, 운전1
		8 급	2	운전1, 사무1
		9 급	1	운전1
교육홍보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1	
		5 급	2	행정2
		6 급	6	행정4, 행정·전산1, 행정·통신1
		7 급	6	행정4, 전산1, 통신1
		8 급	7	행정4 (전임계약직 1 포함), 전산1, 통신2
		9 급		
	기능직	소 계	4	
		7 급	1	사무1
		8 급	3	전화상담1, 사무2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재무회계과	일반직	계	20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시설·공업1
		7 급	6	행정3, 공업1, 시설2
		8 급	4	행정2, 공업1, 전산1
		9 급		
	기능직	소 계	5	
		6 급	1	운전1
		7 급	3	조무·사무1, 운전2
		8 급	1	운전1
		9 급		
세 무 과	일반직	계	41	
		소 계	39	
		5 급	1	행정1
		6 급	7	세무4, 행정·세무3
		7 급	17	세무17
		8 급	12	세무10, 행정1, 전산1
		9 급	2	세무2
	기능직	소 계	2	
		8 급	2	사무2
		9 급		
민원지적과	일반직	계	30	
		소 계	2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 급	8	행정4, 시설4
		8 급	11	행정6, 시설5
		9 급	2	행정1, 행정·시설1
	기능직	소 계	2	
		7 급	1	사무1
		8 급	1	운전1
		9 급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주민생활 지원과	일반직	계	20	
		소 계	18	
		4 급	1	행정1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 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 급		
	기능직	소 계	2	
		7 급	2	사무1, 운전1
사회복지과	일반직	계	14	
		소 계	13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1, 사회복지4
		8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 급	2	행정·사회복지2
	기능직	소 계	1	
		6 급	1	조무·사무1
가정복지과	일반직	계	16	
		소 계	16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1, 사회복지3, 시설1
		8 급	5	행정·사회복지3, 보건1, 행정1
		9 급	1	행정·사회복지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문화체육과	일반직	계	17	
		소 계	15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시설1
		7 급	7	행정5, 시설1, 사서1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2	
		7 급	2	조무·사무1, 운전1
		8 급		
지역경제과	일반직	계	16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공업1, 행정·공업1
		7 급	6	행정4, 공업2
		8 급	5	행정2, 공업2, 행정·농업1
		9급	-	
청소행정과	일반직	계	14	
		소 계	13	
		5 급	1	행정·환경1
		6 급	3	행정2, 행정·환경1
		7 급	6	행정3, 환경2, 행정·환경1
		8 급	2	행정1, 환경1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6 급	1	조무·사무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환경보건과	일반직	계	17	
		소 계	16	
		5 급	1	행정·환경1
		6 급	4	환경1, 행정·환경3
		7 급	5	환경3, 세무1, 행정·환경1
		8 급	5	행정1, 환경2, 행정·환경2
		9 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 급	1	사무1
위생관리과	일반직	계	16	
		소 계	16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보건3, 행정·보건1
		7 급	3	보건3
		8 급	5	보건2, 행정·보건1, 보건·식품위생2
		9 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일반직	계	29	
		소 계	22	
		4 급	1	기술1
		5 급	1	시설1
		6 급	5	행정2, 시설2, 시설·공업1
		7 급	6	행정1, 행정·세무1, 시설2, 공업2
		8 급	7	행정1, 시설5, 공업1
		9 급	2	행정1, 시설1
	기능직	소 계	7	
		6 급	1	기계1
		7 급	2	기계1, 전기1
		8 급	3	운전1, 방호1, 기계1
		9 급	1	운전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건 축 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시설1
		6 급	4	행정1, 시설3
		7 급	3	시설3
		8 급	5	시설5
		9 급	2	시설2
	기능직	소 계	3	
		7 급	2	기계1, 조무·사무1
		8 급	1	사무1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행정1, 시설2
		7 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8 급	4	행정1, 시설3
		9 급	1	시설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사무1
공원녹지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녹지1
		6 급	3	녹지2, 시설·녹지1
		7 급	4	녹지3, 공업1
		8 급	7	행정2, 녹지3, 시설·녹지1, 공업1
		9 급	1	녹지1
	기능직	소 계	1	
		8 급	1	운전1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교통행정과	일반직	계	30	
		소 계	24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행정·공업1, 시설1
		7 급	5	행정4, 세무1
		8 급	11	행정9, 시설2
		9 급	2	행정1, 공업1
	기능직	소 계	6	
		7 급	2	조무·사무2
		8 급	3	운전1, 사무2
		10급	1	조무·사무1
재난안전 관리과	일반직	계	11	
		소 계	11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행정·공업1, 시설1, 행정·시설1
		7 급	4	행정2, 시설1, 행정·전산1
		8 급	3	행정1, 공업2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일반직	계	18	
		소계	14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5
		8 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4	
		7 급	2	사무1, 운전1
		8 급	2	사무2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렌
합계			111	
옥련1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옥련2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환경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연수1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연수2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연수3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청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1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2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3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송도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4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 85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여 위원 위·해촉등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회의소집 및 회의출석,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10조 내지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12일(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6911, www.yeonsu.go.kr/) (참조 : 가정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시행규칙 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 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
6.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8.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상 확대에 관한 사항
9.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각종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
장.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 시 구의회 의원은 1인을 위촉한다..

1.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2.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시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노인단체 관계자
6. 여성단체 관계자
7. 기타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인) ① 위원회는 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③ 공인은 주무담당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 공인날인기록부 ”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성명 : (인)

50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 . 고령화
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제 출 자	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계획서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조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안건(○○○○)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 안건(○○○○) 결정조서

[illegible]

※ 안전 심의에 필요한 보조자료 빠짐없이 수록(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0요일)

연번	성명	확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위원장인

2.1cm	
연수구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위원장인	2.1cm

[별지 제6호 서식]

공인 날 인 기록 부

[illegible]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11 - 856 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다 음

1. 등록일자 : 2011. 11. 21(사용일 : 2011. 12. 01)
2. 폐기일자 : 2011. 12. 01
3. 공인 등록 사유 : 재등록(신조)
4. 공인 폐기 사유 : 공인 마모
5. 등록 및 폐기대상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끝.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신조	연수1동장인	2.1cm×2.1cm		0 전자이미지포함 0 사용일 2011.12.01
폐기	연수1동장인	2.1cm×2.1cm		0 전자이미지포함 0 폐기일 2011.12.01